

이주대학교 직제규정

제1장	1981.	8.	13
제2장	1986.	6.	4
제3장	1995.	5.	18
제4장	1995.	12.	19
제5장	1996.	2.	23
제6장	1996.	7.	15
제7장	1997.	2.	11
제8장	1997.	9.	12
제9장	1997.	11.	24
제10장	1998.	2.	20
제11장	1998.	8.	10
제12장	1999.	7.	19
제13장	1999.	10.	15
제14장	1999.	11.	18
제15장	2000.	7.	13
제16장	2001.	1.	18
제17장	2001.	3.	22
제18장	2001.	5.	18
제19장	2002.	8.	16
제20장	2002.	11.	26
제21장	2003.	1.	28
제22장	2003.	4.	4
제23장	2003.	7.	1
제24장	2003.	12.	17
제25장	2004.	3.	19
제26장	2004.	9.	2
제27장	2005.	2.	17
제28장	2005.	5.	24
제29장	2006.	2.	21
제30장	2006.	4.	11
제31장	2006.	7.	25
제32장	2007.	8.	28
제33장	2008.	3.	18
제34장	2008.	10.	28
제35장	2009.	2.	20
제36장	2010.	6.	22
제37장	2010.	11.	25
제38장	2011.	2.	22
제39장	2011.	8.	23
제40장	2011.	9.	30
제41장	2012.	2.	21
제42장	2012.	5.	22
제43장	2012.	12.	27
제44장	2013.	10.	18
제45장	2014.	2.	10
제46장	2014.	3.	27
제47장	2014.	8.	19
제48장	2015.	2.	16
제49장	2015.	8.	31
제50장	2016.	1.	4
제51장	2016.	5.	19
제52장	2016.	6.	27
제53장	2016.	8.	26
제54장	2016.	12.	15
제55장	2017.	2.	9
제56장	2017.	6.	28
제57장	2018.	2.	12
제58장	2018.	5.	24
제59장	2018.	8.	31
제60장	2019.	8.	26
제61장	2020.	2.	10
제62장	2020.	8.	21
제63장	2021.	8.	20
제64장	2022.	2.	16
개정	2022.	5.	24.

개정	2022.	8.	29.
개정	2023.	2.	10.
개정	2023.	6.	13.
개정	2023.	8.	14.
개정	2024.	2.	7.
개정	2024.	6.	10.
개정	2024.	8.	21.
개정	2024.	12.	18.
개정	2025.	8.	14.
개정	2026.	2.	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7장 제2절에 의하여 이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직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대학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20)

제3조 (업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기구의 장의 직무권한) 각 기구의 장은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 장 기 구

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 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 (개정 2015.8.31)

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첨단바이오융합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 (개정 2015.2.16, 2018.5.24., 2022.2.16., 2024.2.7.)

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개정 2020. 2.10)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모빌리티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개정 2012.2.21, 2012.5.22, 2013.10.18., 2014.03.27., 2024.12.18.)

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혁신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5.8.31., 2017.2.9., 2023.8.14.)

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혁신처장 : 글로벌미래교육원 (개정 2016.8.26., 개정 2020.8.21., 2023.8.14.)
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 (개정 2012.5.22, 2017.2.9)

3. 학생처장 : 생활관, 이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개정 2016.1.4., 2018.2.12., 2021.8.20.)
4. <삭제 2016.8.26.>
5. 기획처장 : 이주지속가능발전센터 (신설 2019.8.26., 개정 2020.8.21., 2021.8.20.)
6. 국제협력처장 :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국제교육센터 (신설 2021.8.20.)
- 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7.2.9.)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첨단ICT융합대학 : 반도체기술혁신원 (신설 2024.12.18.)
 3.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개정 2012.2.21, 2015.2.16., 2016.1.4., 2022.8.29.)
 4. 대학원 : 대학원혁신센터 (신설 2025.8.14.)
 5.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6.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7. 교무혁신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평가센터, 전공설계지원센터 (개정 2012.2.21, 2016.8.26., 2017.2.9., 2023.8.14., 2024. 8. 21., 2024.12.18.)
 8.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 램프(LAMP)사업단 (신설 2012.5.22) (개정 2017.2.9., 2024.2.7.)
 9. 학생처 :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종합지원센터 (개정 2012.2.21, 2016.8.26, 2017.2.9, 2018.8.31.)
 10. 총무처 : 예비군연대, 안전관리센터 (개정 2021.8.20.)
 11. <삭제 2021.8.20.>
 12.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개정 2014.2.10., 2015.8.31., 2021.8.20.)
 13. 중앙도서관 : 출판부
 14. <삭제 2023.8.14.>
 15. <삭제 2017.2.9>
 16.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비서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이하 "RISE사업단"이라 한다), 창업지원단, 혁신융합원, AI융합교육원, 대학혁신단, 인권센터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8.19, 2015.8.31, 2017.2.9, 2017.6.28, 2018.2.12, 2018.5.24., 2018.8.31., 2021.8.20., 2022.5.24., 2022.8.29., 2023.2.10., 2023.6.13., 2023.8.14., 2024.12.18., 2025.8.14., 2026.2.24.)
- ⑨ <삭제 2018.8.31.>
- 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3]

제6조 (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은 정관 및 규정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의 장을 임면한다.

③ 총장은 정관 제87조 제4항에 의거 각 부총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업무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2.20)

제7조 (부총장) 교무부총장은 의료원과 산학협력을 제외한 교무에 관하여,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에 관하여,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2.20, 2015.8.31)

제8조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 ① 대학에 학장을 두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5.24.)

② 대학에 부학장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③ 대학에 학과(부)를 설치하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과(부)장을 둘 수 있다. 학과(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학과(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다만,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경우 조교수 또는 특별임용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개정 2024.6.10.)

④ 대학 및 학과(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고, 학과(부)를 설치하지 않고 대학에 전공을 설치한 경우와 순수 외국인 학생 전용 전공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24.6.10.)

⑤ 일반대학원에 학과를 설치하고, 학사과정 연계학과의 소속 학장 및 해당 학과장이 통할한다. 단, 연계학과의 없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장을 두고,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⑥ 일반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 각 협동과정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 과정, 전공을 설치하고 각 학과, 과정, 전공에 각각 학과장, 과정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⑧ 특수학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⑨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두고, 교학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1.8.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8.23] [전문개정 2012.2.21]

제9조 (대학교본부) ① 교무혁신처는 교육 관련 행정, 교원관리 및 교육혁신 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교원팀 및 교육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3.8.14.)

② 연구정보처는 연구관리 및 전산개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 및 정보시스템팀을 둔다. (개정 2017.2.9)

③ 학생처는 학생활동 지원 및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학생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1.8.23)

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재팀, 재무회계팀 및 시설팀을 둔다. (개정 2014.2.10)

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예산의 편성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예산팀 및 전략분석평가팀을 둔다. (개정 2015.8.31, 2016.1.4, 2018.5.24., 2018.8.31, 2020. 2.10., 2023.8.14., 2026.2.24.)

⑥ 입학처는 학사과정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학생선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입학팀을 둔다.

⑦ 국제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국제교류팀 및 유학생입학팀을 둔다. (개정 2011.8.23, 2015.8.31., 2016.1.4., 2021.8.20.)

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5.24.)

⑨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8.23, 2011.9.30, 2015.8.31., 2016.5.19., 2021.8.20., 2024. 8. 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1.8.23.]

제10조 (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

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
2. <삭제 2017.2.9>
3. 글로벌미래교육원 : 교학팀 (개정 2020.8.21)
4. <삭제 2023.8.14.>
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운영팀 (개정 2016.1.4., 2018.2.12., 2021.8.20.)
6. <삭제 2016.8.26.>
7.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 운영팀 (신설 2019.8.26.)
8. 이주지속가능발전센터 : 운영팀 (신설 2020.8.21.)
9. 국제교육센터 : 운영팀 (신설 2021.8.20.)
10. 생활관 : 운영팀 (신설 2023.6.13.)

③ 부속기관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9.30)

④ 부속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23]

제11조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① 연구기관에는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4., 2022.5.24.)

② 지원기관에는 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③ 지원기관에는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1.9.30)

④ 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1.8.23]

제11조의 2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②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5.24., 개정 2026.2.24.)

③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산학감사팀, 산학사업팀 및 산학기술혁신팀을 둔다. (개정 2014.8.19, 2016.6.27., 2018.8.31., 2020.2.10., 2022.8.29., 2023.6.13., 2026.2.24.)

④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4.8.19)

⑤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특별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기구를 둘 수 있다.

⑥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0.]

제12조 (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2015.8.31>

② 대학발전본부는 대외기관과의 협력 및 기금모금 업무를 담당하며, 허부 조직으로 대학발전팀을 두며, 홍보실은 대학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8.31., 2018.5.24., 2022.5.24.)

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8.31, 2018.5.24)

④ <삭제 2025.8.14.>

- ⑤ RISE사업단은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의한 지산학연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RISE협력추진팀을 둔다. (신설 2025.8.14.)
- ⑥ <삭제 2015.8.31>
- ⑦ <삭제 2017.6.28.>
- ⑧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지원팀,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신설 2018.2.12.)(개정 2018.8.31., 2025.8.14.)
- ⑨ 혁신융합원은 첨단분야 혁신융합 및 교육혁신공유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혁신융합팀과 분야별 사업단을 둔다. (신설 2021.8.20.)(개정 2023.6.13., 2024.12.18.)
- ⑩ AI융합교육원은 AI융합인재양성을 위한 AI·SW교육 전반을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AI융합교육운영팀, AI교육센터, AI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22.8.29., 개정 2026.2.24.)
- ⑪ 대학혁신단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한 대학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혁신팀을 둔다. (신설 2023.8.14.)
- ⑫ 인권센터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 처리 등 인권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하부조직으로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과 운영팀을 둔다. (신설 2018.8.31.)
- 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의 윤리와 안전을 심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2.10.)
- ⑭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5.24., 개정 2026.2.24.)
- ⑮ 홍보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홍보실의 경우 특별임용 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8.5.24., 2022.5.24.)
- ⑯ <삭제 2025.8.14.>
- ⑰ RISE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8.14.)
- ⑱ RISE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5.8.14.)
- ⑲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2.12.)
- ⑳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개정 2026.2.24.)
- ㉑ 혁신융합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8.20.)(개정 2023.6.13., 2024.12.18.)
- ㉒ AI융합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6.2.24.)
- ㉓ 대학혁신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3.8.14.)

②④ 대학혁신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개정 2026.2.24.)

②⑤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②⑥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2.10.)

②⑦ <삭제 2018.5.24.>

②⑧ <삭제 2017.6.28.>

②⑨ 대학발전본부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5.24.) (개정 2022.5.24.)

③⑩ RISE사업단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5.8.14.)

③⑪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2.12)

③⑫ 창업지원단의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4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개정 2022.8.29., 2025.8.14., 2026.2.24.)

③⑬ 혁신융합원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1.8.20.) (개정 2023.6.13., 2024.12.18.)

③⑭ AI융합교육원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6.2.24.)

③⑮ AI융합교육원의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신설 2022.8.29., 개정 2026.2.24.)

③⑯ 대학혁신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23.8.14.)

③⑰ 인권센터의 상담소에는 소장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③⑱ 장애학생지원실에는 실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③ 인권센터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 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신설 2018.8.31.)

[본조신설 2011.8.2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8.23]

제12조의2 (부총장직속기구) ① <삭제 2018.8.31>

② <삭제 2018.2.12>

③ <삭제 2018.8.31>

④ <삭제 2018.2.12>

⑤ <삭제 2018.2.12>

⑥ <삭제 2018.2.12>

⑦ <삭제 2018.2.12>

[본조신설 2015.8.31][전문개정 2016.12.15]

제13조 (보직임기 및 직위의 해제) ① 정관 제46조 제4항에 의거 이사장이 임면하는 교원의 보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10.)

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본조신설 2011.2.2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1.8.23]

제 3 장 회 의 체

제14조(교무회의) ① 본 대학교에 교무회의를 두고, 교무회의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교무혁신처장, 연구정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협력처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2.20, 2011.8.23, 2015.8.31, 2017.2.9., 2018.2.12., 2023.8.14.)

② 교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① 총장은 중요 학사사항의 심의 또는 지문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제정된 규정류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1982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2. 학법대우 제04-16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연구정보처장, 교무처장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연구처장, 교육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2.17. 학법대우 제04-312호)

이 규정은 2005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 05-107호:2005.5.24.)

이 규정은 2005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05-414호:2006. 2.21.)

이 규정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06-65호:2006. 4.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교육처장, 사무처장, 대외관계지원실장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무처장, 총무처장, 대외협력처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 06-179호:2006.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원장보, 학장보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부원장, 부학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교육대학원 원장보, 한국어학당 원장 및 보건진료소 소장의 임기는 이 규정 제9조제2항과 제11조제1항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의 보직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 5급 일반직원으로 임명된 팀장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 07-229호 : 2007.8.28)

이 규정은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08-20호 : 2008.3.18)

이 규정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08-258호 : 2008.10.28)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08-365호 : 2009.2.20)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10-124호 : 2010.6.22)
이 규정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10-270호 : 2010.11.25)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10-360호 : 2011.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보직 교원의 임기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제 11-226호 : 2011.8.23)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11-271호 : 2011.9.30)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 11-406호 : 2012.2.21)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2-91호 : 2012.5.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2-306호 : 2012.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3-221호 : 2013.10.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3-358호 : 2014.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4-34호 : 2014.3.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4-204호 : 2014.8.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4-381호 : 2015.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5-274호 : 2015.8.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5-411호 : 2016.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6-128호 : 2016.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6-184호 : 2016.6.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6-277호 : 2016.8.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6-409호 : 2016.12.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6-487호 : 2017.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7-196호 : 2017.6.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183호 : 2018.2.12)
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74호 : 2018.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8-185호 : 2018.8.3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194호 : 2019.8.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384호 : 2020.2.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제3항 개정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219호 : 2020.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246호 : 2021.8.2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513호 : 2022.2.1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129호 : 2022.5.2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263호 : 2022.8.29.)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467호 : 2023.2.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090호 : 202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소속 교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의 소속으로 본다. 다만, '생활관' 소속 교직원은 '생활관운영팀' 소속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부서(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10156호 : 2023.8.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무처장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무혁신처장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10364호 : 2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의 '정보통신대학' 은 2024년 4월 교육부가 '미래모빌리티학과' 를 첨단학과로 승인하고 학생정원을 배정할 시 '첨단ICT융합대학' 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139호 : 2024.6.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235호 : 2024.8.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374호 :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평가인증센터장' 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교육성과평가센터장' 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혁신융합단장' 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혁신융합원장' 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236호 : 2025.8.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 - 505호 : 202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SW융합교육원장' 은 이 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AI융합교육원장' 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